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 정	:	2010. 3. 1.
개 정	:	2011. 6. 1.
개 정	:	2012. 1. 1.
개 정	:	2015. 1. 19.
개 정	:	2017. 6. 20.
개 정	:	2018. 3. 1.
개 정	:	2018. 5. 21.
개 정	:	2020. 2. 17.
개 정	:	2020. 6. 15.
개 정	:	2020. 9. 24.
개 정	:	2021. 4. 28.
개 정	:	2021. 8. 20.
개 정	:	2021. 12. 17.

I. 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8장에 (교과, 학점, 수업, 졸업) 의거하여 금강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졸업학점(삭제)

II-1. 위원회

- 교육과정의 공정한 편성과 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과정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 기획관리처장, 각 학부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된다. <개정 2021. 4. 28.>
 - 위원회는 특별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8.>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전공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분석 보고서에 따른 전공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2. 17>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2021. 4. 28.>

III.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

1. 교육과정은 학칙 제33조(교육과정 편성·이수)에 따라 매 학년도마다 “교양과목” 과 “전공과목” 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1. 4. 28.>
 - 가. 전공과목은 학사내규에서 정한 전공 취득학점의 200%이내에서 편성한다. 다만, 학과 운영상 부득이하게 초과편성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초과편성에 대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교과목의 학점은 1-3학점으로 한다.
2.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편
 - 가. 교육과정의 제정은 해당 학부장이 편성한 후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부장이 개편사유와 교육과정의 신규대조표 및 로드맵을 작성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24.>
 - 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3. 교과목 개설 및 승인
 - 가. 매학기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부장은 교학지원처에서 정한 기한까지 교학지원처에 해당 교과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8.>
 - 나. 교학지원처장은 개설교과목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 다. 전공 교과목은 78학점 이내로 개설한다. 다만, 학과 운영상 부득이하게 초과개설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초과개설에 대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V. 교과목 개설 및 이수(삭제)

V. 교육과정 개편(삭제)

VI. 평가 및 환류

1. 각 전공에서는 매 학년도가 종료되면 전공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2. 보고서에는 당해년도 전공교육과 관련하여 수요분석, 운영결과, 개선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작성된 보고서는 교학지원처에 제출한다.
4. 교학지원처는 제출된 보고서를 교육과정품질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고, 결과를 각 전공에 전달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VII. 경과조치

1. 2010학년도 3학년 이상 재학생은 2009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2. 2010학년도 2학년 이하 재학생(2009학년도 입학생)은 2010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신설된 “실용영어회화 1, 2, 3, 4”, “한국사” 는 반드시 이수한다. 다만, 2010년 3월 1일 기준 2학년 재적생의 “한국사” 의무수강은 제외한다.

3. 2007학년도 2학년 이하 통상통역학(영어, 일어, 중어)전공 학생에 적용한 공통영어 3과목 이수에 대한 사항은 2010학년도부터 폐지한다.
4. 각 학년도별 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 <개정 2020. 6. 15., 2020. 9. 24., 2021. 4. 28., 2021. 8. 20., 2021. 12. 17.>
5. 2015학년도 교육과정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 지침 이전의 2012 및 2015학년도 학제개편에 따라 폐지된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상 소속학과 학생이 동일계열학과의 전공언어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이 개정 지침 이전의 2016 및 2017학년도 학제개편에 따라 폐지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상 소속 학과(전공) 학생이 동일계열학과(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VIII. 지침 개정

본 지침의 개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이나 특이사항은 본 지침과 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 기준에 의거 총장의 승인 하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지침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초과 교양학점을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변경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자율설계융합전공 이수기준에 대한 사항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중 2005년까지 1학년 교양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학부조직 변경으로 2006학년도 이후에 졸업을 위해 추가된 전공별 교양필수 과목(예: 국제통상의 이해, 경영학의 이해)을 이수할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 ※ 2006학년도 학부조직이 변경되어 통상통역학(영어, 일어, 중어)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교양필수과목중 추가 지정된 전공별 교양필수과목을 이수토록 한다. 이는 전공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 2007. 7. 1일 기준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1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행정연습”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 2010학년도 2학년이하 재학생은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신설된 “실용영어회화1, 2, 3,4” , “한국사” 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0. 3. 1일 기준 2학년 재적생의 “한국사” 의무수강은 제외한다.
- ※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양과정 취득학점은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을 포함하여 25학점이상 35학점 이내로 하며 각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양과정 취득학점은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을 포함하여 13학점이상 20학점 이내로 이수하여야 한다.
-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양과정 취득학점은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을 포함하여 23학점이상 25학점 이내로 하며 교양선택과목은 전공기초를 제외한 3개이상 영역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양필수과목 3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 ※ 졸업인증 외국어 영역 학점은 전공 교과로 편성 및 개설된 모든 외국어 교과를 해당 언어의 졸업인증 교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교과를 전공 교과와 졸업인증교과로 중복 인정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공 외국어 관련 교과를 졸업인증 교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 ※ 졸업인증 컴퓨터 영역 학점은 전공, 교양 교과로 편성 및 개설된 모든 컴퓨터 교과를 해당 컴퓨터의 졸업인증 교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교과를 전공, 교양 교과와 졸업인증교과로 중복 인정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공, 교양 컴퓨터 관련 교과를 졸업인증 교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7.>
- ※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인증 독서영역 필수 이수를 폐지한다. 이미 독서영역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을 교양선택 ‘인성영역’ 교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5.>
-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이미 이수한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 교과목을 졸업인증제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에 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교과를 교양 교과와 졸업인증 교과로 중복 인정은 불가능하다. <신설 2020. 6. 15.>
- ※ 학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재이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 중 동일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재이수 대체인정 교과목 신청을 통해 승인 받아 재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4.>
- ※ 8학기 이상 학생 중 마지막 학기에 교양필수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졸업을 불가능한 경우, 이미 이수하였거나 개설 예정인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대체교과목 인정 신청을 통해 교육과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교양필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동일한 교과에 대해 중복 인정은 불가능하다. <신설 2021. 4. 28.>
- ※ 학제개편에 따라 폐지된 학과(전공)의 재학생 중 마지막 학기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여도 졸업요건 전공이수 학점 충족이 어려운 경우, 이미 이수하였거나 개설 예정인 교과목 중 유사한 과목에 대해 이수구분 변경신청을 통해 교육과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동일한 교과에 대해 중복 인정은 불가능하다. <신설 2021. 8. 20.>
-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양필수 및 졸업인증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여 발생한 초과 교양학점을 이수구분변경 신청을 통해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7.>
-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2022학년도 입학생 중 자율설계융합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자율설계하여 2개 전공별 교과목을 각각 30학점 이상, 또는 자율설계하여 3개 이상 전공별 교과목을 각각 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7.>

